

# 해외경쟁정책동향

• 본 연합회 •

## 미국

### 연방법무부, 건강보험사간의 기업결합에 조건 부과

연방법무부는 UnitedHealth Group Inc.(이하 United)와 PacifiCare Health Systems Inc.(PacifiCare)에 대해 이들 간의 기업결합을 위해서는 아리조나주 Tucson과 콜로라도주 Boulder에서의 PacifiCare의 건강보험 사업부문을 매각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법무부는 또한 1년 후에는 캘리포니아 Blue Shield사와의 네트워크 접속협정도 종료하도록 United에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업결합이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건강보험 서비스가 가격은 인상되고 질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독점금지국은 이와 관련하여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이번에 신고된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연방법무부는 동의 명령을 제출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연방법무부의 우려는 해결되어 소송도 취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건강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부분과 의사들이나 의료보조자들의 의료 서비스를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험사들 간의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Thomas O. Barnett 독점금지국장 대행은 말했다. 그는 또한 “건강보험 수익은 미국내 소규모 고용주들의 비용지출과 직결된다. 이번 매각은 소규모 고용주들과 보험서비스 이용자들로 하여금 건강보험사들 간의 경쟁으로 인한 이익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고 덧붙였다.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United와 PacifiCare는 Tucson에서 2~50인 사이의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있는 소규모 고용주들을 상대로 판매되고 있는 3개의 주요 건강보험사에 포함되는 사업자들이다.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다면, 이번 기업결합은 United가 가격을 인상하고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연방법무부는 내다봤다.

이에 동의명령서에는 Tucson 지역 일대에서 PacifiCare의 소규모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사업부문을 모두 매각하여, 다른 경쟁사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고된 기업결합 계획안에 따르면, United가 Tucson과 Boulder 지역의 의사들에게 지불하는 수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이는 곧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의 저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연방법무부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동의명령서에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5년간 United는 캘리포니아의 Blue Shield가 100% 소유하고 있는 CareTrust Networks의 네트워크를 임차해서 이용해 왔다. 이 네트워크 접속협정에 따라서, United는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Blue

Shield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고, 캘리포니아에 판매하는 보험상품 개발에 대해 Blue Shield와 공조하여 대응할 수 있었다. 그런데 PacifiCare와 Blue Shield는 건강보험 시장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PacifiCare의 사업부문을 United가 취득한 후에는 United는 원칙적으로 Blue Shield와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기업결합 후에도 이러한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경쟁사들 간에 공동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고, 경쟁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동의명령서에는 United가 Blue Shield와 어떠한 정보교환도 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으며, 현재 유효한 협정은 앞으로 1년 이내에 종료하도록 했다.

United는 미국에서 가장 큰 건강보험사이며, 5,500만 이상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보험 및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2004년 이익이 370억 달러가 넘는다. PacifiCare는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및 네바다주 등에서 약 1,300만 보험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2004년 이익은 120억 2천만 달러였다.

2005. 12. 20. 연방법무부

### FTC, 미국제약업계의 반경쟁적 협정의 정지를 구하는 소송 제기

Warner Chilcott과 Barr의 협정은 소비자의 상표미등록 한 경구피임약의 접근을 5년간 박탈하는 것이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금일 제약회사 Galen Chemicals Ltd.(현 Warner Chilcott) 및 Barr Laboratories(Barr) 간의 협정은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상표미등록 된 Warner Chilcott의 Ovcon이라는 경구피임약을 선택할 기회를 거부하는 것이 되므로 동 협정의 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FTC의 주장에 의하면 Barr는 식품·의약품국(FDA)으로부터 규제상의 허가를 받은 즉시 상표미등록의 Ovcon 제조를 개시할 것을 계획했다. 우선 Ovcon이 동등한 상표미등록 약품과의 경쟁에 직면하게 되면 Warner Chilcott은 5년내에 Ovcon의 판매량의 절반을 잃을 것이 예상되었다. 이 예상에 직면하여 Warner Chilcott은 Barr와 경쟁하는 대신에 Barr의 상표미등록 약품인 Ovcon의 미국으로의 진입을 5년간 막는 협정을 Barr와 체결하였다. Barr가 경쟁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대가로 Warner Chilcott은 2,000만 달러를 Barr에게 지불하였다.

「Warner Chilcott과 Barr간의 협정은, 경쟁을 하지 않고 상표미등록된 약의 판매회사와 단지 장래의 상표미

등록 약품의 경쟁자 사이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공유하려고 하는 적나라한(naked agreement) 협정이다」고 FTC의 Deborah Platt Majoras 위원장은 언급하였다. 「기업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경쟁을 배제하는데 동의한다면 FTC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입할 것이다」.

### FTC의 주장

2000년 1월 Warner Chilcott은 경구피임약의 상표등록 된 약품 Ovcon35를 Bristol Mayers Squibb(BMS)로부터 취득하였다. Ovcon은 특허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동 취득의 일환으로서 BMS는 Ovcon을 Warner Chilcott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했다. 주장에 의하면 Galen의 Ovcon의 매출액은 2000년 이후로 2배 증가하였고, 그 약은 2004년에 동 사의 최대 매출을 올린 제품 중 하나였다.

주장에 의하면 2001년 9월에 Barr는 FDA에 상표미등록 약품인 Ovcon의 제조판매의 허가를 신청하였다. Barr는 상표미등록의 Ovcon을 상표미등록 된 약값의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었다. 2003년 1월 Barr는 연말까지 상표미등록 약품인 Ovcon을 판매할 의도가 있음을 공표하였다. 주장에 의하면 Warner Chilcott은 상표미등록 약품인 Ovcon의 진입을 「회사에 있어서의 최대의 위기」라고 받아들였다.

Warner Chilcott은 Barr의 상표미등록 약품인 Ovcon이 1년 이내 Ovcon의 신규처방약의 적어도 50%를 차지하게 되며, 그럼으로써 Ovcon 수익의 중대한 감소를 일으킬 것으로 예측하였다.

상표미등록 약품과의 경쟁으로부터 이러한 수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Warner Chilcott은 상표미등록 약품이 진입하기 전에 동 제품의 씹는 타입(Chewable)을 도입하였다. 주장에 의하면 Warner Chilcott의 전략은 Ovcon의 고객을 Ovcon Chewable로 전환시키고, Ovcon의 판매를 중지한다는 것이었다. 내과의에 의한 명백한 동의가 없는 한 약국에서 상표미등록판 Ovcon이 Ovcon Chewable로 대체될 수 없었다.

FTC에 의하면 2003년 중반까지 Warner Chilcott에 의한 Ovcon의 수익을 보호하는 전략(상표미등록판 Ovcon의 진입 전에 고객을 Ovcon Chewable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위태롭게 되었다. Barr의 상표미등록판 Ovcon의 진입은 급박해 보였으며, Ovcon Chewable은 FDA의 허가를 얻지 못했다. 2003년 9월, Warner Chilcott은 Barr와 기본적인 협정을 체결하였다. 동 협정하에 Barr가 FDA로부터 상표미등록판 Ovcon에 대해서 최종적인 인가를 얻은 후 Warner Chilcott은 Barr에 대해 합계 2,000만 달러를 지불할 선택권을 가졌다. 주장에 의하면 동 지불에 대

한 대가로 Barr는 미국에서 5년 동안 상표미등록판 Ovcon 제품과 경쟁하지 않게 되었다. FTC의 주장에 의하면 진입과 경쟁을 하지 않는 대신 Barr는 만일 Warner Chilcott이 요구한다면 Warner Chilcott에 대한 Ovcon의 제2공급자가 될 것에 동의하였다.

주장에 의하면 Warner Chilcott과 Barr는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수평적 협정을 실행하였다. 2004년 4월 Barr는 FDA로부터 상표미등록판 Ovcon의 제조판매 허가를 얻었다. 몇 주 후에 Warner Chilcott은 협정에서 결정된 금액을 Barr에 지불하였다. 그 결과 Barr는 2009년 5월까지 상표미등록판 Ovcon의 진입을 배제하였다.

FTC의 주장에 의하면 Barr의 상표미등록판 Ovcon의 진입을 5년간 방해하는 내용의 비경쟁을 결정한 피고인들의 수평적 협정은 불공정한 경쟁 방법이며, FTC법 제5조에 위반한다는 점을 문제시 하였다. 주장에 의하면 경쟁을 배제하는 협정에는 정당화 이유는 없으며, 이것은 명백한 거래 제한이다.

2005. 11. 7. 연방거래위원회 발표문

## EU위원회, Telefónica의 O2 인수 조건부 승인

EU위원회는 스페인 통신회사인 Telefónica가 영국 통신회사인 O2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승인했다. 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제로밍 서비스 시장, 특히 영국에서 경쟁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러한 경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elefónica로 하여금 FreeMove alliance에서 탈퇴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이 더 이상 유럽 역내 또는 회원국에서 유효경쟁을 저해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Telefónica와 O2는 모두 통신회사로서, Telefónica는 유선전화와 무선전화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면에, O2는 무선전화 부문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다. Telefónica는 스페인과 체코에서, O2는 영국, 독일, 아일랜드에서 각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사는 최종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사업과는 별도로, 다른 통신회사들을 상대로 국제로밍 서비스 사업도 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위원회는 네트워크 사업자들 간의 연합이 국제로밍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대한 시장조사

를 집중적으로 했다. 국제로밍은 무선전화 가입자가 외국에서도 자신의 원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자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

Telefónica는 현재 FreeMove alliance의 회원사이며, EU 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3개의 다른 거대사업자(프랑스 텔레콤, 텔레콤 이탈리아, 도이치 텔레콤)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O2는 Starmap alliance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비교적 좁은 지역을 커버하고 있으며 회원사들 간의 결속력도 견고하지 않다.

EU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제로밍 서비스 시장을 경쟁제한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도매시장에서 통신회사들은 자신의 가입자가 외국에서 무선으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간 국제로밍 계약을 체결한다. 특히 FreeMove alliance는 그 회원사들 간에 국제로밍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었다.

위원회가 실시한 시장조사에서는, 이번에 신고된 기업결합으로 O2는 Telefónica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Starmap alliance에서 FreeMove alliance의 회원사로 옮겨갈 것이 예상된다. 그 결과 O2는 FreeMove의 회원사가 아닌 통신사업자들과는 국제로밍 통화에 대한 준비를 현저히 줄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비회원사 통신사들에게는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영국에서는

Vodafone 그룹을 제외하고는 FreeMove와는 독립해서 국제로밍을 할 사업자가 없게 된다.

위원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밀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Telefónica는 FreeMove alliance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탈퇴하고, 위원회의 사전 동의 없이는 재가입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2006. 1. 10. EU위원회

### EU위원회, MS사에 명령 불준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경고

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MS)가 지난 2004년 3월에 결정으로 부과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결정에서는 MS가 EC조약 제82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PC 운영체제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독점력을 워크그룹 서버 운영체제 및 미디어 플레이어 시장으로 전이시켰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대한 조치 중의 하나로서, 위원회는 MS에게 MS 워크그룹 서버가 아니라도 윈도우즈가 장착된 PC와 서버에서 구동될 수 있도록 완전하고 정확한 인터페이스 다큐먼트를 제공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MS가 이러한 위원회의 입장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후에, 위원회는 이행강제금(a daily penalty)을 부

과할 것으로 보인다.

경쟁위원인 Neelie Kroes는 “나는 MS가 우리의 결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부여했다. 이제 MS의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2004년 3월의 결정에 의해 부과된 의무들은 MS의 주장을 1심법원에서 심사하는 동안 유보된 상태에 있었는데, 이 MS의 주장은 2004년 1월 22일 동 법원에 의해 거부되었다. 그 날로부터 위원회는 MS측과 이행의 준수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고, MS가 제안한 연동방식에 대한 시장 테스트를 거쳤다. 시장 테스트 결과, 위원회는 EU조약에 의거하여 2005년 11월 10일에 결정을 했다. 이 결정의 내용은 MS가 2005년 12월 15일까지 ① 완전하고 정확한 시스템 연동 정보를 제공하고, ② 합리적인 시일 내에 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경우, 최고 2백만 유로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의 이러한 결정 이후, MS는 개방 의무가 부과된 연동 정보를 수정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사전 검토 후 이 정보는 불완전하며 부정확한 것으로 판단했다. MS는 5주 이내에 위원회의 성명에 답변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권한도 가진다.

EU위원회는 먼저 각 회원국 경쟁당국들의 자문을 거친 후에,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2005년 12월 15일  
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행강제금을 부  
과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한 MS가  
위원회는 결정을 준수할 때까지 매일  
이행강제금을 누적하여 부과할 것으  
로 보인다.

이와 함께 MS가 연동 정보를 합리  
적인 기간에 접근 가능하도록 제공하  
고 있는지에 대해, 위원회는 MS가  
제공하는 추가 정보들에 대해 지속적  
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 할 것이다.

2005. 12. 22. EU위원회

## EU위원회, 루프트한자와 유로 윙스 간의 기업결합 승인

EU위원회는 독일의 항공사들인  
Lufthansa와 Eurowings Luft-  
verkehrs AG(이하 Eurowings) 및  
그 계열사이자 저가항공사인 Ger-  
manwings 간의 기업결합을 승인했  
다. 위원회의 이번 승인은 비엔나와  
슈투트가르트 공항의 슬롯(slot)과  
기타 부지 사용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이행되는 경우, 유럽 역내에  
서 경쟁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위원회는 판단했다.

경쟁위원 Neelie Kroes는 “위원  
회는 다른 항공사들이 결합기업과 경  
쟁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  
에서 루프트한자는 처음으로 저가 항

공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되었고, 저가  
항공사는 몇몇 노선들에서 경쟁을 제  
고시킬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루프트한자는 독일의 주요항공사이  
며, 여객 및 화물 운송과 관련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Star  
Alliance의 회원사이기도 하다. 루프  
트한자는 최근 스위스항공을 인수했  
다. 유로윙스는 최근 100% 자회사인  
Germanwings를 통해, 저가항공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5/2006년 겨울부터 함부  
르크에서 쾰른, 본, 베를린까지의 노  
선에서 운행하고 있다.

루프트한자는 이미 유로윙스의 주  
식 49%를 소유하고 있으나, 유로윙  
스와 어떤 형태로 연합할지에 대해서  
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루프트한자와 유로윙스 간에는 루  
프트한자가 유로윙스와 저먼윙스를  
단독으로 지배하고 의결권을 갖는 것  
에 사인했다.

네트워크사업자인 루프트한자와 저  
가항공사인 저먼윙스는 서로 다른 사  
업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은 시간에 예민한(time-sensitive)  
승객들과 그렇지 않은(non-time  
sensitive) 승객들에게 경쟁사로 인  
식되어져 왔다. 위원회가 조사한 결  
과, 이들 간의 기업결합은 유럽내 3  
개 노선, 즉 쾰른/본-비엔나, 슈투트  
가르트-비엔나 및 슈투트가르트-드레  
스덴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루프트한자가 역시

Star Alliance의 회원사인 오스트리  
안 항공과 밀접한 협력관계에 있다는  
것도 중요하게 고려됐다.

위원회의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결합 당사자들은 비엔나와 슈  
투트가르트의 공항 슬롯을 포기하기  
로 했다. 이로 인해 경쟁제한이 우려  
되는 노선들에서 경쟁이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루  
프트한자는 이들 노선에서 경쟁사들  
을 상대로 경쟁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추가적으로 취하겠다고 알  
려왔다.

2005. 12. 22. EU위원회

## 유럽위원회,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로부터 Gas Natural과 Endesa의 합병 영향의 검토 요 청을 각하

유럽위원회는 Gas Natural에 의  
한 Endesa(양사 모두 스페인 기업)  
취득계획이 포르투갈 및 이탈리아 시  
장에 주는 영향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유럽위원회보다도 포르투갈 및 이탈  
리아의 경쟁당국 쪽이 좀더 적당하  
고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유럽위원회  
는 포르투갈 경쟁당국, 그리고 계속  
해서 이탈리아 경쟁당국이 유럽위원  
회에 제출한 당해 취득안의 영향의  
심사요청을 각하하였다. 이러한 결정  
은 Gas Natural과 Endesa의 거래  
가 공동체 규모를 가지는지 여부(또

한 동 집중이 유럽위원회 중에서 1개 국만 관계하는지 여부)에 관한 유럽 위원회의 평가와는 관련이 없다. 동 평가는 단지 EU합병규칙 제5조의 계산에 따라서 2개사 중 어느 쪽이 공동체내 매출액 중 3분의 2 이하를 동일 회원국(스페인)에서 획득할지 여부에 의한 것이다.

Gas Natural은 스페인에서 천연 가스기업이며, 동 지역에서 전력의 생산·판매도 하고 있다. Endesa는 스페인에서 주요한 전기사업자 2개사 중 1개이며, 가스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5년 9월 5일 Gas Natural은 Endesa에 대한 주식공개매수를 발표했다. 본 건 거래는 2005년 9월 12일에 스페인 경쟁당국으로 신고가 행해졌다.

그러나 Endesa는 스페인 경쟁당국이 본 건을 심사하는 관할이라는 것에 항의했다.

유럽위원회의 합병규칙에 정의되어 있는 형태로 Gas Natural과 Endesa의 합병은 공동체 규모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가정아래, 9월 20일 포르투갈 당국은 유럽위원회에 대해 포르투갈에서 합병의 영향을 심사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요청은 합병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것이다.

9월 22일 유럽위원회는 당해 이송 요청을 다른 회원국에 연락하고, 그들에게 참가 기회를 주었다. 9월 28일 스페인 경쟁당국은 유럽위원회에

대해서 포르투갈 당국에 요청에 참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전했다. 10월 7일 이탈리아 경쟁당국은 유럽위원회에 포르투갈 당국의 요청에 참가할 의사를 전했다.

유럽위원회는 기업집중에 관한 사안의 이송에 관한 위원회고시에 비추어 ① 당해 합병계획은 포르투갈 및 이탈리아에서 경쟁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② 유럽위원회는 그러한 영향을 심사하는데 보다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주의 깊게 심사를 하였다. 유럽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요청을 각하하기로 결정하였다.

2005. 10. 27. 유럽위원회 발표문

## 일본

### 공취위, 네이처 레버러토리에 경고

공정취인위원회는 주식회사 네이처 레버러토리가 판매하는 코엔자임 Q10 함유 식품에 관한 표시에 대해 경품표시법 제4조제1항제1호(우량오인)의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경고조치 했다.

또한 주식회사 네이처 레버러토리아외의 2명의 코엔자임 Q10 함유 식품의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경품표시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있

던 사실이 인정되어, 이들에게서 대해서는 주의를 주었다. 코엔자임 Q10은 지용성의 비타민 모양 물질이며, 이것을 함유 하는 식품이 건강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주식회사 네이처 레버러토리는 「MVP 코엔자임 Q10 9000mg」 및 「MVP 코엔자임 Q10 포접체 9000mg」이라고 칭하는 타블렛형 코엔자임 Q10 함유 식품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의 용기에 “3알갱이 주요성분 코엔자임 Q10 300mg” 또는 “3알갱이 주요성분 코엔자임 Q10 포접체 300mg”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해당상품 3립 중에는 코엔자임 Q10이 300mg 함유되어 있는 것 같이 표시했다. 그러나 해당 상품 3립 중에 포함된 코엔자임 Q10의 함유량은 약 18mg이었다.

한편, 코엔자임 Q10 함유식품의 판매업자 2명은 동 식품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용기의 라벨에 「코엔자임 Q10 포접체 108mg」, 「코엔자임 Q10 포접체 100mg 함유」라고 표시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해당 식품 중 코엔자임 Q10의 함유량은 각각 표시된 중량의 2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경품표시법 위반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주었다.

2006. 1. 12. 공정취인위원회

## 공취위, 후쿠야마 통운 주식회사에 대해 권고

공정취인위원회는 후쿠야마 통운 주식회사(이하 후쿠야마 통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하청대금지불지연방지법 제4조제1항제3호(하청대금의 감액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권고 조치했다.

또한 하청대금지불지연방지법에서는 2004년 4월 이후 새롭게 정보성과물 작성 위탁 및 역무 제공 위탁을 동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역무 제공 위탁 분야에 있어서의 첫 번째 권고 공표 사안이다.

후쿠야마 통운은 화물의 운송 및 집배 업무를 하청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있던중,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사업자에게 운송 단가의 인하를 요청하여, 해당 운송 단가의 인하에 응하지 않는 하청사업자에 대해서는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의 사이에 지불해야 할 하청 대금 중에서 '협력비'라는 명목으로 일정액수를 공제했다. 하청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하청 대금을 감액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감액한 금액은 하청사업자 130명에 대해 총액 2억 874만 7212엔에 달한다. 후에 후쿠야마 통운은 2005년 8월 26일 및 9월 26일에 하청사업자에 대해 감액분을 반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취인위원회는 이러한 감액 행위가 하청대금지불지연방지법의 규정에 위반한다는 취지 및 향후 하청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하청 대금의 액수를 줄이지 않겠다는 취지를 이사회에서 확인함과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거래처 하청사업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했다. 또한 사내 체제의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그 내용을 자사의 임원 등에게 철저히 주지시키도록 했다.

2005. 12. 28. 공정취인위원회

## 공취위, 사단법인 후쿠야마시 의사회에 대해 경고

공정취인위원회는 사단법인 후쿠야마시 의사회(이하 후쿠야마시 의사회)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여, 이 의사회가 동 법 제8조제1항제4호(사업자단체에 의한 구성사업자의 기능 또는 활동의 부당한 제한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경고했다.

후쿠야마시 의사회는 의료 기관의 개설 및 진료과목의 증설에 대해 회원이 히로시마현 지사 등에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기 전에 소속된 블록의 대표가 서명날인 한 신고서에 의해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회원간의 경합이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 신고내용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 그 협의

결과에 따르게 했다.

또한 회원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 및 진료과목의 증설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인정되어 이러한 행위는 독점금지법 제8조제1항제4호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어서 공정취인위원회는 후쿠야마시 의사회에 대해 지금부터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도록 경고했다.

2005. 12. 27. 공정취인위원회

## 공취위, 후쿠오카시 및 주변 지역의 석유제품 판매업자들에 대해 경고

공정취인위원회는 후쿠오카시 및 그 주변 지구에 소재하는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개설한 주유소와 관련된 표시에 대한 조사를 해왔다. 그리고 석유제품 판매업자 6사가 사용하던 표시가 경품표시법 제4조제1항제2호(유리 오인)의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6사에 대해 경고했다.

소비세총액표시 제도의 도입으로, 일반 소비자는 통상 주유소에 표시된 가솔린의 판매 가격에 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 6사는 후쿠오카시 또는 그 주변 지역에 개설한 주유소 부지 내에 설치하고 있는 석유판매회사의 상표 등이 표시되어 있는 표지인 이른바 싸인 폴 또는 입간판에 가솔린 가격을 표시하면서, 소비세를 뺀 가격

을 기재함으로써 해당 가격을 소비세 포함 가격으로 일반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있었다.

지난 2005년 11월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이들 주유소는 119엔 내지 121엔 이라고 싸인 풀이나 입간판에 기재를 해 놓았는데, 이는 소비세를 제외한 가격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5. 12. 27. 공정취인위원회

### 공취위, 주식회사 HRD 외 2사에 대해 배제명령

공정취인위원회는 주식회사 HRD (이하 HRD), 주식회사 일본 흠 클리에 실(이하 일본 흠 클리에 실) 및 실버 세이코 주식회사(이하 실버 세이코)의 3사가 판매하고 있는 수돗물을 활성화 시키는 가정용품과 관련된 표시가 경품표시법 제4조제1항제1호(우량 오인)에 해당하는 표시로 간주되어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3사에 대해서 배제명령을 실시했다.

이들은 자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물을 통과시키면 체내의 활성 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효과 및 효능이 있는 물이 생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HDR 등 3사는 제품을 일반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였다.

HRD는 2004년 1월 무렵부터 2005년 12월 7일 무렵까지 일반소비자에게 배포한 팸플렛 및 2004년

1월 무렵부터 2005년 10월 21일 무렵까지 인터넷상에 개설하여 일반소비자들이 열람 가능한 상태로 해놓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광고에서, 해당 상품에 수도물을 통과시켜 얻은 물은 목욕탕내 곰팡이 발생이나 욕조내 물때 발생을 억제해 화장실 냄새를 해결하고, 세탁시 옷에 묻은 때를 떨어지기 쉽게 하고 포동포동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세제의 사용량을 줄여주는 동시에, 식기의 기름때를 쉽게 떨어지게 한다고 표시했다.

일본 흠 클리에 실은 2004년 6월 무렵부터 2005년 12월 5일 무렵까지 일반소비자에게 배포한 팸플렛에서 해당 상품을 이용해 수돗물로부터 얻어진 음료수에는 당근이나 레몬에 필적하는 항산화력이 있어 이를 마시는 경우 체내의 활성 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것 같이 표시했다.

실버 세이코도 2004년 6월 무렵부터 2005년 12월 10일 무렵까지 인터넷상에 개설해 일반소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홈페이지에 게재한 광고 및 2005년 3월 25일 무렵부터 2005년 12월 9일 무렵까지 일반소비자에 배포했던 팸플렛에서, 해당 상품을 이용해 수도물로부터 얻어진 물은 높은 항산화력이 있어 체내의 활성 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것 같이 표시했다.

이에 공정취인위원회는 이들 3사에 대해 이와 같은 표시를 증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는데, 3사는 기한 내에 해당 표시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이 자료는 해당 표시의 증명이 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따라서 공정취인위원회는 일반소비자들에게 실제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표시했다는 취지를 공시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이를 임원, 종업원 및 자사에 등록해 있는 판매원들에게 철저히 주지시키도록 했다. 또한 향후 이러한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2005. 12. 26. 공정취인위원회